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2026. 7.

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·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



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·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7. 9.
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
- 나.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센터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
- 다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제1항에 따라 창원시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로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·12호점 관리 및 운영
- 나.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 - 「창원시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)
 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○ 필요성

- (공공성)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가능
- (안정성)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위탁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가능
- (효율성) 민간위탁 운영 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용이하고 법인 전입금,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
- (전문성) 민간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이용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및 학습지도 가능

다.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

○ 다함께돌봄센터 운영

- 이용아동 모집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
- 돌봄 상담,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
- 돌봄프로그램 운영
(기본서비스) 출결관리, 아동의 보호, 급·간식 제공 등
(공통프로그램) 놀이와 휴식, 신체활동, 숙제지도, 일상생활교육 등
(특별프로그램) 외국어, 음악, 미술, 체육, 과학 활동 및 체험 등
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
- 시설 종사자 채용 및 관리

○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재산 관리

-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및 비품 유지·관리

라. 민간위탁 시설 현황

○ 이용대상 : 돌봄이 필요한 6~12세(초등학생) 아동

○ 운영시간 : 표준서비스 제공시간*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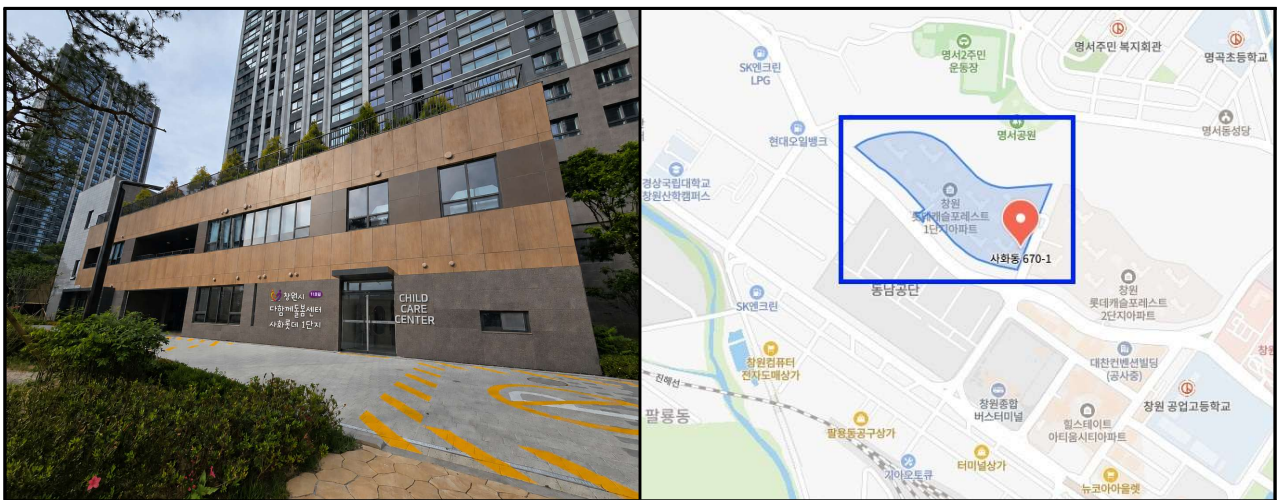
* 학기 중 : 13:00~20:00, 방학 중(단기방학 포함) : 09:00~18:00

○ 시설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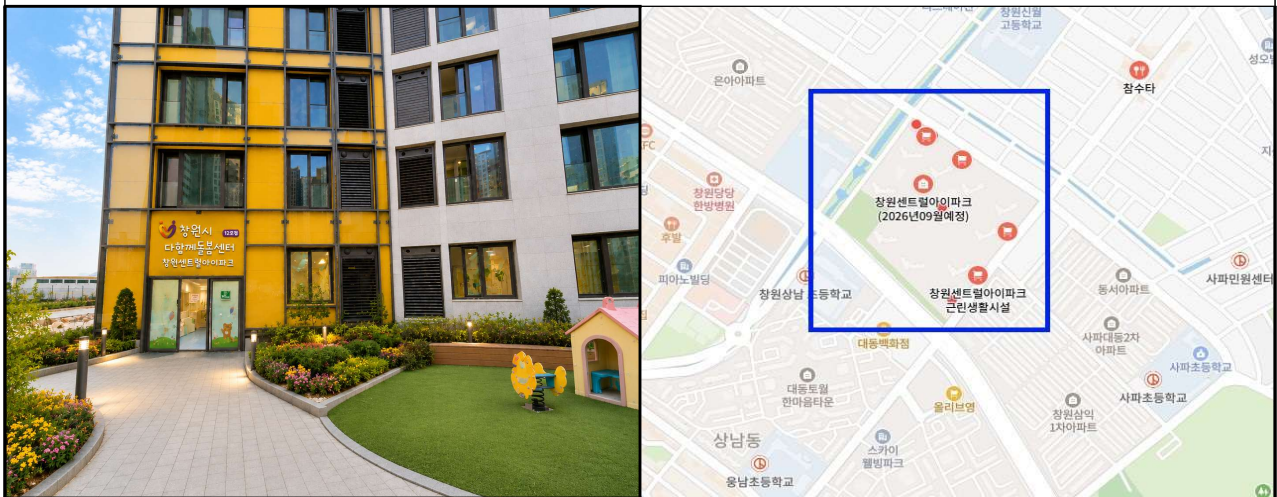
기관명	위치	면적	종사자	정원	시설구성
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(사화롯데1단지)	의창구 사화로 363 (사화동)	132.9m ²	2명	20명	학습실, 놀이실, 사무실, 조리실
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(센트럴아이파크)	성산구 신사로 64 (신월동)	110.31m ²	2명	20명	

※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
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(개정일 '21.1.12.)

○ 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



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

마. 위탁기간

-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: 2026. 10. 1. ~ 2031. 9. 30.(5년)
-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: 2026. 12. 1. ~ 2031. 11. 30.(5년)

바. 소요예산 : 32,136천원(국비50:도비25:시비25)

○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

<단위:천원/3개월분>

항 목	예 산 (3개월/'26.10.~12.)	세부내용
합 계		24,102(국 12,051, 도 6,026, 시 6,026)
운영비	3,090	· 업무추진비, 여비, 수용비 및 수수료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연료비, 기타운영비 및 사업비
인건비	19,332	· 센 터 장 : 3,342천원×3개월×1명=10,026천원 · 돌봄교사 : 3,102천원×3개월×1명=9,306천원
종사자 처우개선비	1,680	· 종사자수당 : 200천원×3개월×2명=1,200천원 · 자격수당 : 80천원×3개월×2명=480천원

○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

<단위:천원/1개월분>

항 목	예 산 (1개월/'26.12.)	세부내용
합 계		8,034(국 4,017, 도 2,009, 시 2,009)
운영비	1,030	· 업무추진비, 여비, 수용비 및 수수료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연료비, 기타운영비 및 사업비
인건비	6,444	· 센 터 장 : 3,342천원×1개월×1명=3,342천원 · 돌봄교사 : 3,102천원×1개월×1명=3,102천원
종사자 처우개선비	560	· 종사자수당 : 200천원×1개월×2명=400천원 · 자격수당 : 80천원×1개월×2명=160천원

사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선정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: 원안가결(적정)

※ '26. 7. 2.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(서면)

붙임 1. 관련법령 1부.

2.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1부. 끝.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창원시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

제6조(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(이하 “다함께돌봄센터”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,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다. 다만, 시장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임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.

제7조(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)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

제5조(민간위탁 사무의 예시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청소년, 아동,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하려면 창원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1.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

-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의회의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 이 경우,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의 동의(제1항에 따른 동의를 포함한다)를 받은 날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
1. 청소, 경비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 2. 연간 위탁비용이 1억원 이하인 사무
- ⑤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
1. 민간위탁 사무명
 2.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 3.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
 4.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 개요
 5. 민간위탁 기간
 6. 민간위탁 예산
 7. 수탁기관 선정방식
 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 9.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
 10.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
- ⑥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붙임 2

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

- 근 거 : 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- 대 상 : 돌봄이 필요한 6세~12세(초등학생) 아동(소득수준 무관)
- 운영시간 : 표준서비스 제공시간* 포함하여 주 5일, 1일 8시간 이상

*표준서비스 제공시간 : (학기 중) 13:00~20:00, (방학 중) 09:00~18:00

○ 서비스 내용

- (기본서비스) 출결관리, 아동의 보호, 급·간식 제공 등
- (공통프로그램) 놀이와 휴식, 신체활동, 숙제지도, 일상생활교육 등
- (특별프로그램) 외국어, 음악, 미술, 체육, 과학 활동 및 체험 등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

○ 최초개소 : 2019. 5. 25.(다함께돌봄센터 1호점)

○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: 9개소(의창구 2, 성산구 3, 마산합포구 1, 마산회원구 2, 진해구 1)

시 설 명	소재지	종사자	정원	운영주체	비고
계	9개소	22	180	법인 6, 단체 3	
다함께돌봄센터1호점	성산구 가음로64번길 8, 2층 (가 음 동)	3	20	사단법인 창원여성회	돌봄선생님 2명 (4시간 교대)
다함께돌봄센터2호점 (진해우아한클럽)	진해구 충무로 23, 1층 (신흥동, 블루빌 주민공동시설)	3	20	경남바른교육 사회적협동조합	돌봄선생님 2명 (4시간 교대)
다함께돌봄센터3호점	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로28 2층 (대동이미지아파트, 복리동)	3	20	꿈뜨레 지역공동체	돌봄선생님 2명 (4시간 교대)
다함께돌봄센터5호점	의창구 중동남로 8, 2층 (중동, 육아종합지원센터)	2	20	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	
다함께돌봄센터6호점	성산구 대암로 256, 관리동 2층 (대방동, 대방그린빌아파트)	2	20	그린&북공동체	
다함께돌봄센터7호점	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6길 40, 202호	3	20	꿈뜨레 지역공동체	돌봄선생님 2명 (4시간 교대)
다함께돌봄센터8호점	마산합포구 현동10길 39 (현동, 창원현동휴튼)	2	20	경남조이스쿨 사회적협동조합	
다함께돌봄센터9호점	성산구 대상중앙로 10 (중앙동,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)	2	20	더본 사회적협동조합	
다함께돌봄센터10호점	의창구 사회로 365 (사회동,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2단지)	2	20	사단법인 창원여성회	

※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폐지('25.9.30.)